

# 대전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3고단739 명예훼손  
피 고 인 甲  
검 사 박건영(기소), 이지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 변호사 문성식  
판 결 선 고 2014. 5. 21.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 16:00경 대전 \*\*대학교 본부 4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학교 교수인 피해자 乙이 피고인과 함께 유흥주점에 가서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교수 책임용을 막기 위하여 ‘乙이 유흥주점에 7회에 걸쳐 출입하며 그 곳에서 매번 성관계를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학교 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 및 \*\*학부 학생들에게 이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판단

### 가. 유홍주점 방문 및 종업원과의 성관계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므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乙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丙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丁의 진술기재, 은행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CD, 각 사실조회회보서를 종합하면, 乙은 2012. 10. 6. 봉명동 소재 \*\* 노래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유홍업소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였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약 10여 차례 ++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그 중 최소한 1번은 ‘##’이라는 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사실, 乙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여러 차례 대전 일원의 유홍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3)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14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乙이 피고인과 여러 차례 대전 일원의 유홍주점에서 술을 마

셨고 그 중에서 최소한 2번은 종업원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 나.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피고인이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이 대부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보았고 ②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원생들의 성적, 진로 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乙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로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乙이 교수로 재임용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피고인이 乙의 재임용을 막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 및 \*\*학부 학생들에게 이를 배포한 점, ③ 확인서 배포 대상이 대학교 구성원들에게 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또는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도형석 \_\_\_\_\_